

국민권익위원회 하반기 청년인턴 채용 추가합격자 발표

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4-41호와 관련하여, 국민권익위원회 청년인턴 채용 공고의 추가합격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.

2024년 7월 26일
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

□ 추가합격자

지원코드 (채용분야)	추가합격자
인턴02 (조사행정)	안○○(인턴0203)

□ 추가합격자 제출서류

- 상세 기본증명서 1부(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)
-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
- 증명사진 1매(파일제출)
-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(붙임1)
-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(붙임2)

□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

- 제출기한 : '24. 7. 29.(월)
- 제출방법 : 전자우편(suvn@korea.kr)

□ 유의사항

- 합격자 통지 후,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,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채용 예정일은 '24. 8. 1.(목)입니다.

□ 문의처 : 044-200-7185(운영지원과)

<붙임2>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

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[별지 제9호 서식]

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채용기관	기관명	국민권익위원회	채용방법	공개경쟁채용	채용직위(직급)	청년인턴
	채용사유	국민권익위원회 청년인턴 채용				

채용대상자 (확인인)	성명	주소			
	연락처	생년월일	채용 예정일		

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

① 가족채용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(자회사인 경우 모회사)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② 예외 해당 여부	①에서 “예”에 답변한 경우,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?	[] 예 [] 아니오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채용대상자(확인인)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① “가족채용”의 가족은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.

-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-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